

# Zoom-in Trade

▶ COVER STORY:  
항공화물의 수입 물류흐름 ..... 1

▶ 관세무역관련 법령 변경 소식 ..... 4

▶ FTA NEWS:  
한-EU FTA 발효 이제는 활용이다! ..... 2

▶ US CUSTOMS VALUATION RULINGS ..... 5

▶ VOICES FROM THE FIELDS:  
일반수출입화물 통관절차 ..... 3

▶ WHERE IS GRACE CHANG?: 1 등 신화 ..... 7

▶ ABOUT WRITERS ..... 7

## 신한관세법인 월간 관세 무역 소식지 LEADERSHIP TOWARD INNOVATION & CREATIVITY

신한 관세법인의 자매회사인 신한 인비스타는 화물보관 및 물류업을 하는 회사이며, 금년 6월부터 김포공항 창고에서 업무를 시작함으로써 이제는 신한 관세법인과 신한 인비스타가 협업으로 수출입 물품의 반입, 통관, 보관, 배송 진행까지 일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에게 한층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물류흐름의 토탈 코스트를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보세창고에 대한 개념과 반입부터 수입통관까지의 항공화물의 수입물류 흐름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하고자 한다.



## 항공화물의 수입 물류흐름

**□ 보세창고의 의의**  
보세란 수입신고수리 미완료 상태에 있는 외국물품, 즉 보세화물이 관세를 내지 않고 세관관리하에 있는 것을 뜻한다. 관세법 제 183 조(보세창고)에서 보세창고에는 주로 보세상태의 외국물품이나 통관을 하려는 물품을 장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내국물품의 장치도 일부 허용하고 있다.

**□ 보세창고 장치기간**  
관세법 제 177 조(장치기간)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에 물품을 장치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고 있다.

- 1. 보세창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기간**
    - 가. 외국물품(다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 1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나. 내국물품(다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 1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 다. 정부 비축용 물품, 정부와의 계약이행을 위하여 비축하는 방위산업용물품, 장치간 비축이 필요한 수출용원재료와 수출품보수용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국제물류의

촉진을 위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비축에 필요한 기간

**2. 그 밖의 지정보세구역의 장치기간**  
일반적인 특허보세구역의 장치기간에도 불구하고 고시에 의하여 보세구역별로 물품의 장치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정 장치장 반입물품의 경우에는 장치기간이 6월로 정해져 있지만, 부산항, 인천항, 인천공항, 김해공항 항역 내의 지정장치장의 반입기간은 2월(2개월까지 연장 가능)이며, 보세창고 반입 물품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장치기간은 6월(6월까지 연장 가능). 하지만, 인천공항, 김해공항, 부산항, 인천항의 항역 내 보세창고 및 부두 내 보세창고, 부두 밖 컨테이너 전용보세창고의 경우에는 반입기간이 2월이기에 장시간 물품을 장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타 보세구역으로 보세운송을 해야 한다.

**□ 수입물류흐름과 수입신고 절차 (항공화물의 경우)**  
**1. 적하목록 제출 및 심사완료**  
일반적인 항공 화물의 수입절차는 선적국으로 부터 비행기가 출발하게 되면 선사를 통해 세관으로 적하목록이 제출된다. 보통 적하목록이 제출되는 시기를 기준으로 출항전 및 입항전 수입신고 여부가 결정된다. 흔히들 입항전 수입신고라 함은 비행기가 도착하기 전이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 2-4-1(신고수리)에 따르면 출항전 또는 입항전 신고물품에 대한 심사는 적하목록이 제출된 때 신고수리를 하게 되어있기에, 비행기가 선적국에서 출발한 후 적하목록이 제출되기 전에 출항전 및 입항전 신고가 가능하다.

**2. 반입(항공사 창고이용시)**  
비행기가 목적국에 도착하게 되면, 각 항공사 창고에서 화물 분류 작업이 이뤄지게 되며, 각 물건의 정리가 끝나면 최종적으로 항공사 창고에서 반입 신고를 하여, 제품이 창고에 반입 되었다는 전산 등록이 된다. 반입이 전산에 등록 된 이후부터 일반적인 수입신고가 이뤄지게 된다. 비행기 도착시간이 물품 반입 시간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비행기 도착과 동시에 물품이 반입되지 않으며 보통 비행기 도착 후 반입까지는 물리적인 화물이동에 시간이 소요되어 평균적으로 3~4시간이 걸린다고 볼 수 있다.

**3. 보세운송 및 반출 (일반창고 이용 시)**  
항공사 창고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입을

원하는 창고(ex.신한인비스타)로 보세운송을 통해 화물을 운송하여 창고에 반입하게 되며, 반입이 이뤄진 이후에 수입 신고가 이뤄지게 된다. 보세운송 중에도 수입신고가 가능한 바, 보세구역 도착 전 수입신고 제도가 있다. 다만,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보세구역 도착 전 수입신고의 심사는 물품이 반입 된 때 신고수리를 하기에 반입 후 신고와 큰 차이는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장기간 물품을 창고에 장치시켜두는 경우라면 항공사 창고보다 일반 보세창고로 보세운송을 하여 반입하여 보관시에 보관료가 더 저렴하다고 볼 수 있다.

#### 4. 수입신고

창고에 반입이 이뤄지게 되면 보세구역 장치 후 수입신고가 이뤄지게 된다. 일반적인 수입신고는 모두 물품이 창고에 반입 된 이후에 이뤄지게 되며, P/L, 서류제출, 물품검사의 3 가지 절차중 하나를 거쳐 최종 수입신고 수리가 이뤄지게 되면 외국물품에서 내국물품이 되는 것이다.

신한 관세법인은 신한 인비스타의 보관, 물류, 운송기능의 추가로 인해 신한을 이용하여 물품을 수입하는 고객사 들에게 반입, 수입통관, 보관, 배송까지의 일련의 물류 흐름을 한꺼번에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가격 경쟁력인 측면에서도

물류전반에 걸쳐서 토탈 코스트 절감에 큰 성과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성 기 창

[kcsung@customsservice.co.kr](mailto:kcsung@customsservice.co.kr)

### FTA News

## 한-EU FTA 발효, 이제는 활용이다!

2007년 5월에 협상을 시작한 한국과 유럽연합(EU)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2009년 7월, 2년 2개월 만에 최종 타결되어, 2011년 7월 1일 협상시작 4년 2개월 만에 잠정 발효될 예정이다. 동아시아 최초로 세계 최대의 경제권이자 우리나라 제 4위 교역파트너인<sup>1</sup> EU와의 FTA가 체결되어, 신중국부터 선진국까지 다양하게 구성된 27개 회원국은 우리기업에 다양한 시장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한-EU FTA에 대하여 발효시점인 현재 한-EU FTA 활용을 위한 모든 것에 대하여 살펴본다.

□ **한국, EU 진통 끝 FTA 비준 동의안 국회 통과**  
EU 측은 이탈리아 자동차 업계의 반발로 비준이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었으나 압도적인 표차(찬성 495 표, 반대 16 표, 기권 75 표)로 비준안이 통과되었다. 한국 또한 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한-EU 비준동의안을 상정해 가결처리 하였다

#### □ 잠정발효와 정식발효는 어떻게 다른가

우리나라의 FTA는 국회 비준 동의안이 있으면 발효 가능하다. 그러나 27개국으로 구성되는 EU는 각 나라 의회의 비준을 받기까지 꽤 오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통상 2-3년) 협정문에 근거해 EU 이사회의 승인과 EU 의회의 동의안으로 관세철폐 등 FTA 효력을 잠정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잠정 발효가 되면 EU와 EU 공통 권한 사항인 지식재산권, 형사집행, 문화협력 의정서의 일부 협력조항을 제외한 상품 양허 등 한-EU 협정문의 효력이 거의 모두 발생) 각 국가의 개별국의 비준절차가 모두 끝나면 정식 발효 된다.

#### □ 한-EU FTA 주요 양허 내용

6년 내 관세철폐 기준으로 EU는 99.6%, 한국은 93.6% 관세가 철폐(품목 수 기준)된다. 공산품의 경우 한국은 기계·화학부문에서 EU는 자동차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자국산업의 민감성을 반영한 합의이나, 수입액 기준으로 EU는 발효 후 6년 내 100%를 양허한 높은 수준의 합의라 볼 수 있다.

한-EU FTA 혜택 받으려면 인증수출자 지정, 원산지 관리체제 준비해야 우리나라의 수출 물품이 FTA 체결 상대국으로부터 특혜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FTA 원산지 증명서)를 수입국 세관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한-EU FTA는 기존의 한-칠레, 한-EFTA, 한-미 FTA와 같은 자율발급체제와는 달리 수출건별 6,000 유로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 '원산지 인증수출자'에 한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對 EU 수출기업이 한-EU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산지 인증 수출자 인증을 득하여야 한다.

#### □ 원산지 인증수출자제도

원산지 증명 능력이 있다고 관세당국이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 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EU는 "인증수출자제도"를 1975년부터 시행 중이므로 EU기업은 FTA 발효 즉시 관세혜택을 향유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 제도를 2010년 4월에 도입해 우리 기업의 인증 획득 지연 시 우리 기업은 FTA 발효 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태 발생 가능하다. 이를 방지하고자 관세청에서는 先가인증 後본인증제도 통해 對 EU 수출업체가 발효 전 인증수출자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 先가(假)인증 後本(本)인증 제도

5월 27일까지의 인증수출자 지정 현황은

#### ※ 한-EU FTA 협상 일정

일자	내용
2007.05	한-EU FTA 협상 공식 출범 선언
2007.05~ 2009.03	한-EU FTA 제 1~8차 협상 개최
2009.07	한-스웨덴 정상회담시 협상 타결 선언(스톡홀름)
2009.10	한-EU FTA 가서명
2010.10	한-EU FTA 정식서명
2011.02	한-EU FTA 동의회 회의의 통과
2011.05	한-EU FTA 비준동의안 우리 국회 본회의 통과
2011.07.01	한-EU FTA 잠정발효

전년도 對 EU 수출액 535 억불 중 FTA 양허대상 수출액 236 억불의 71.2%(168 억불) 수준까지 인증을 완료하여 한-인도 FTA 16.4%, 한-아세안 FTA 28.7% 등 既 발효 FTA와 비교할 때 상당히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었지만, 對 EU 수출기업수 기준으로 볼 때 인증대상 기업 8,206 개 중 폐업 또는 관세혜택이 미미하여 FTA를 포기한 업체를 제외한 '실질 인증대상' 4,333 개의 23.7%(1,026 개)가 인증을 완료하여 다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sup>2</sup> 이에 관세청은 인증 '신청' 중소기업은 실질요건을 제외한 모든 형식요건의 추후보완을 허용하는 先가(假)인증 後本(本)인증 제도를 한시 추진하여 인증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하였다.

#### □ 원산지 검증제도

한-EU FTA, 사후 제한적 간접 검증제도 채택하고 있다. 이는 FTA 특혜적용 물품에 대해 수입국 세관이 사후에 원산지 기준 충족여부를 조사해 미충족 시

□ 양허 구간별 주요품목 및 현행관세율

구분	우리측	EU 측
즉시철폐	(자동차) 자동차부품(8)(섬유) 직물제의류(8~13), 인조섬유제 워딩(8), (전자) 컬러 TV(8), 냉장고(8), 복사기(8) (철강) 스테인리스강 및 기타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1)	(자동차) 자동차부품(4.5) (섬유) 편직물(8), 인조단섬유(4) 편직제의류(12), 모 스웨터(13) (전자) 텔레비전용 음극선관(14), 진공청소기(2.2), 리튬전지(4.7) (철강) 철강제 관연결구류(3.7) 등 전제품
4년내 철폐	(자동차) 중·대형(1,500 cc 초과) 승용차(8) (기계) 펌프(8), 기계압축기(8), 공작기계 부분품(8) (전자) 스피커(8), 무선통신기기부품(8), (철강) 철강제의 기타 관연결구류(8)	(자동차) 중·대형(1,500 cc 초과) 승용차(10) (기계) 베어링(8), 지게차(4.5), 내연기관 점화플러그(3.2) (전자) 전자레인지(5), 항행용 무선기기(3.7)
6년내 철폐	(자동차) 소형(1,500 cc 이하) 승용차(8), 하이브리드 차량(8) (기계) 밸브류(8), 전동축(8), 펌프부분품(8) (전자) 심전계(8), 초음파영상진단기(8)	(자동차) 소형(1,500 cc 이하) 승용차(10), 하이브리드 차량(10) (전자) 컬러 TV(14), TV 카메라 및 수상기(14), 광학기기부품(6.7), VCR(14)

(출처: 지식경제부)

특혜적용을 배제하는 방법으로 제한적 간접검증 채택한 것이다.

\* **제한적 간접검증:** 수입국 세관이 수출국 세관에 조사를 의뢰하되 조사과정에 수입국 세관 참관

또한 원산지 증명서 오류, 허위발급 시 양 당사국 법령에 따라 처벌 또는 추정되며, 수출자가 EU 수출물품에 대해 원산지 증명서를 오류·허위·부정 발급할 경우 처벌뿐만 아니라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지 못하므로 對 EU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자율증명에 있어 우리 기업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 한-EU 문화협력 의정서 발효

프랑스 파리를 중심으로 K 팝(POP)으로 대변되는 한류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7 월 1 일 한·유럽연합(EU) 문화협력 의정서 또한 발효되었다. 이는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맞춰 효력을 갖는 것으로 양자가 방송, 영화, 애니메이션 등 시청각물을 공동 제작할 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의정서에 따르면 방송, 영화, 애니메이션 등 시청각 공동제작 작품이 국내물로 간주되면 세금 감면과 보조금 지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리 제작물이 EU 에서 공동제작물로 인정받으려면 우리 측 기여도가 애니메이션 35%

이상, 기타 시청각물 30% 이상이라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강 승 주

[sjkang@customsservice.co.kr](mailto:sjkang@customsservice.co.kr)

- 2011년 5월 기준, 교역 순위: 1. 중국 2. 미국 3. 일본 4.EU (출처: 무역협회)
- 출처: 2011년 5월 관세청 보도 자료 (한-EU FTA 활용 준비실태 점검 및 활용률 제고 대책)

Voices From The Fields

[중국 특집! 기획 연재 시리즈]

# ④ 일반수출입화물 통관절차

일반수출입화물이라 함은 해관의 일반수출입감관제도에 따라 해관절차를 밟는 화물로서, 관세 등 관련 세·비를 납부하고 모든 필요한 해관절차를 마쳐 더 이상 해관감관을 받지 않고 생산과 소비 또는 유통에 직접 투입할 수 있는 화물을 말한다. 만약 특정감면세 혜택을 받은 경우라면 특정감면세감관제도에 따라 해관절차를 밟게 되고 특정감면세화물이라고 칭하게 되며, 보세승인을 받아 보세감관제도에 따라 해관절차를 밟게 되면 이를 보세화물이라고 칭한다.



일반수출입화물의 통관절차는 전기단계와 후속단계가 없이 오직 수출입단계만 있으며, 다음과 같이 4 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즉, ①수출입신고 → ②검사협조 → ③세·비 납부 → ④화물인수 또는 적재이다. 참고로 모든 수출입화물은 통관절차가 있으며 일반수출입화물의 통관절차에서 세·비 납부절차만 제외한 다른 내용은 모두 동일하다.

1. 수출입신고

신고란 수출입화물의 송수하인, 위탁받은 통관기업(報關企業)이 《해관법》 및 관련 법률·행정법규의 요구에 따라 규정된 기한과 장소에서 전자신고서와 종이신고서 양식을 사용하여 해관에 실제적인 수출입화물의 정황을 보고하고 해관의 심사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수입화물은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 화물이 수입되는 지점의 해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수출화물은 송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 화물이 수출되는 지점의 해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화물의 신고기한은 화물을 적재한 운송수단이 입국 신고한 날로부터 14 일 이내(운송수단이 입국 신고한 날의 둘째 날부터 시작, 이하 동일)이며, 수입화물을 적재한 운송수단이 입국신고를 한 날로부터 3 개월을 초과하여 해관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관에서 인수하여 법 규정에 따라 공매하게 된다. 신고일자는 신고 자료가 해관에 접수된 날이며, 그것이 전자자료 신고방식이면

아니면 종이신고서 신고방식인 간에 해관에서 신고 자료를 접수한 날짜가 바로 신고일자가 되는 것이다. 수입화물 수하인이 규정된 기한 내에 해관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 해관은 신고지체가산금(滯報金: 역자 주)을 부과한다. 수입화물의 수하인이 규정된 기한을 초과하여 해관에 신고할 경우에 신고지체가산금의 징수는 일수에 따라 징수하게 되는데, 운송수단이 입국 신고한 날부터 시작하여 제 15 일 째 되는 날을 시작일로 하고, 해관에 신고 된 날(신고일자)을 종료일로 하며 시작일과 종료일 모두 신고지체가산금에 산입한다. 신고지체가산금의 일일 징수금액은 수입화물 과세가격의 0.5%이며, 인민폐 "원"을 징수단위로 한다. 이때 1 원 미만의 금액은 징수하지 아니하며, 징수최소금액은 인민폐 50 원으로 한다. 그러나 해관규정에 따라 불가항력 등 특수한 상황에 의해 신고가 지체된 경우에는 해관에 신고지체가산금 감면신청을 할 수 있다.

수출입신고절차는 '①신고서류 준비 → ②신고 전 화물의 샘플채취 및 확인 → ③신고 → ④신고내용의 수정 또는 취소'의 절차로 이루어진다. 세부내용은 이하 같다.

**1) 신고서류 준비**

신고서류는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말하는데, 첨부서류는 기본서류와 특수서류가 포함된다. 기본서류는 수출입화물의 운송서류와 상업서류를 의미하며, 주로 선하증권(B/L)과 송장(INVOICE), 포장명세서(P/L) 등이 있다. 특수서류는 수출입허가증, 가공무역수책(종이수책, 전자수책 및 전자화수책을 포함), 특정감면세증명서, 일부 화물의 수출입 증명을 위한 원 수출입화물신고서, 수출대금결제증명서, 원산지증명서, 무역계약서 등이 있다. 수출입화물 송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하 '화주'라 약칭한다. 필자 주)은 관세사에게 기본서류와 특수서류를 제공해야 하며, 관세사는 이를 심사 후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신고서류를 준비하는 원칙은 기본서류와 특수서류 모두 완전하고 유효하며, 합법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신고서 작성은 반드시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해야 하고 신고서와 첨부서류가 모두 일치해야 한다.

**2) 신고 전 화물 샘플채취 및 확인**

수입화물 화주는 해관신고 전에 화물의 품명과 규격, 모델번호 등을 확정하기 위해 해관에 화물확인 또는 샘플채취를 서면신청 할 수 있다. 검역증명서가 필요한 화물이나 샘플채취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사전에 주관부문이 발급한 서면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샘플채취 후에는 현장 관리감독 해관공무원과 수입화물 화주는 해관이 작성한 샘플채취기록과 목록에 서명 확인한다.

**3) 신고**

신고는 ①전자자료 신고와 ② 종이 신고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전자 자료를 신고한 다음 종이 신고를 하게 되고 이때 각종 첨부서류도 제출하게 된다. 전자자료 신고는 (1) "단말기 신고방식"과 (2) "위탁 EDI 방식", (3) "직접 EDI 방식", (4) "인터넷 신고방식" 등 4 가지 종류의 신고방식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신고서 내용을 해관전산시스템에 입력하면

전자자료 신고서가 자동 생성하게 된다. 그리고 해관으로부터 전자자료 신고서에 대한 심사가 끝나면 "현장제출" 또는 "면허제출"이라는 통지를 받게 된다. 그러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내에 인쇄된 종이신고서와 규정된 첨부서류 및 서명날인을 가지고 화물소재지 해관에 도착하여 서면으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신고내용의 수정 또는 신고 취소**

해관에서 수출입화물의 신고를 접수한 후에는 전자 자료와 종이로 된 수출입화물신고서를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부득이하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관의 심사와 허가를 받은 후에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있다.

**2. 검사협조**

**1) 해관검사**

해관검사란 해관이 수출입화물 화주가 신고한 내용이 수출입화물의 실제상황과 부합되는지 여부나 상품의 품목분류, 가격, 원산지 등을 확정하기 위해 수출입화물에 대해 실질적 검사를 행하는 법 집행행위라 할 수 있다. 해관은 검사를 통하여 통관기업(報關企業)의 허위신고, 신고부실 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향후 이루어질 징수, 통계, 후속관리 등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게 된다. 검사는 해관 감관구역 내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감관구역 내에서 검사실시가 곤란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해 감관구역 외에서 검사할 필요가 있을 경우, 화주의 서면신청에 의해 해관감관 구역 밖에서 검사할 수 있다. 검사시간은 해관의 정상적인 근무시간 내로 한다. 위험물품이나 신선하고 부패 또는 변질하기 쉬운 장기보관이 어려운 화물 그리고 기타 특수정황으로 인하여 긴급히 통관이 필요한 화물의 경우에는 우선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해관검사는 전체검사와 선별검사로 구분된다. 전체검사란 대상화물에 대해 모두의 포장을 개봉하여 화물의 실제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하는 반면, 선별검사란 일정비율에 따라 전체화물에서 일부화물을 추출하여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검사는 인공검사와 설비검사로 구분된다. 해관은 검사완료 화물일지라도 밀수 등 혐의가 있어 재검사가 필요할 경우나 화주가 해관 검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또한 해관은 화주가 검사현장에 없다할지라도 화물이 법규위반 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직접 개장검사 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해관감관장소의 경영인, 운송수단책임자가 검사현장에 임하여 검사에 협조하고 검사기록에 확인서명하여야 한다.

**2) 검사협조**

해관검사 시, 화주는 검사현장에 임하여 다음과 같이 협조하여야 한다.  
 가) 해관의 요구에 따라 화물의 이동, 개장 및 포장 수형  
 나) 사전 이해와 숙지한 신고화물에 대한 정황을 가지고 검사공무원의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  
 다) 해관의 추가검사와 분석 또는 감정 등 필요에 따라 샘플채취 시 협조하여야 하며, 해관에서 발급한



샘플채취 목록을 수령

라) 검사종료 시, 검사공무원이 작성한 "해관 수출입화물 검사기록서"를 읽고, 아래상황에 대한 기록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

- ① 박스개장의 구체적 정황
- ② 화물에 손상 및 손상을 끼칠만한 원인이 있는지 여부
- ③ 샘플채취 현황
- ④ 검사결과

**3) 화물 손해배상**

수출입화물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나 화물개장 또는 이동 등으로 인해 화물이 손상받기 쉬워 검사공무원이 검사과정에 있어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화주는 해관검사 실시 전에 이를 고지해야 한다. 검사공무원의 책임으로 인해 화물에 손상을 입힌 경우, 화주는 해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배상범위는 검사과정에서 검사공무원이 손상을 입힌 직접적인 경제손실부분에 한정한다. 그러나 다음 경우에는 배상하지 않는다.

- 가) 화주가 화물을 운반, 개봉, 포장 또는 보관을 잘못하여 조성된 손실
  - 나) 부패 또는 실효되기 쉬운 화물이 해관의 정상적 업무처리절차 시간 내에 변질 또는 실효
  - 다) 해관의 정상적 검사로 인해 발생하는 피할 수 없는 마모나 훼손
  - 라) 해관의 검사 전에 발생하였거나 해관검사 후에 발생하는 훼손
  - 마) 불가항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화물 훼손과 손실
- 화주가 해관검사 시 화물훼손 여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후에 화물훼손부분이 발견될지라도 해관은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3. 세비 납부**

화주가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해관은 이에 대해 심사하고 검사가 필요한 화물에 대해서는 선별 검사한다. 검사 후에는 전산으로 계산된 세비를 심사하고 세금납부고지서와 비용수납증명서를 발부한다. 화주는 규정시간 내에 세금납부고지서 또는 비용수납증명서를 가지고 지정 은행에 가서 세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중국전자구안 네트워크를 이용해 세비를 납부하는 해관에서는 화주가 인터넷으로 지정 은행에서 전자적으로 세비를 납부할 수 있다. 은행으로부터 납부가 완료됐다는

정보를 받게 되면 해관에 화물면허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세부 내용은 향후 추가 게재 예정)

**4. 현장면허와 화물인수(적재)**

**1) 수출입 현장면허 및 화물통관 종결**

해관의 수출입 현장면허(放行)란 해관에서 ①수출입화물의 신고를 접수하고 ②전자신고서와 종이신고서 그리고 첨부서류를 심사한 후, ③화물을 검사하고, ④세비를 징수(감면)하거나 담보를 제공받은 후에 수출입화물에 대한 현장 감관을 종결하고 화물이 감관현장을 떠나도 된다는 것을 허락하는 통관단계로 해관이 수입화물의 인수증명서(提货凭证) 또는 수출화물의 적재증명서(装货凭证)상에 해관 면허인을 날인하는 것을 말한다. 화주는 이를("Paperless 통관" 시는 해관이 컴퓨터로 통지하여 출력한 면허증빙 자료) 근거로 수입화물을 인수하거나 수출화물을

운송수단에 적재 수출한다. 화물의 통관종결(結关)이란 수출입화물이 해관 수속을 모두 종료하여 더 이상 해관감관을 받지 않아도 됨을 의미한다.

수출입 현장면허에는 다음같이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첫째는 화주가 모든 해관절차를 마친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해관에서 수출입 현장면허를 해 준다는 것은 곧 통관이 모두 종결되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는 화물이 아직 통관 종결되지 않은 경우이다. 즉, 보세화물, 특정감면세화물, 임시수출입화물, 일부 기타 수출입화물 등과 같이 면허 시에 모든 해관절차가 완료된 것은 아니며 해관이 일정기간 동안 여전히 감관을 실시하게 되는 경우이다. 따라서 이러한 화물의 경우에는 해관 수출입 현장 면허 자체가 바로 통관이 종결된 것은 아니다.

**2) 화물의 인수 또는 화물적재**

수입화주가 해관으로부터 면허인이 날인된 수입화물

인수증명서를 교부받게 되면, 이를 근거로 화물의 입항지 항구와 공항, 터미널, 우체국 등지의 해관감관창고에 가서 수입화물의 인수절차를 밟는다.

마찬가지로 수출화주가 해관으로부터 면허인이 날인된 수출화물 적재증명서를 교부받게 되면, 이를 근거로 화물의 출항지 항구와 공항, 터미널, 우체국 등지의 해관감관창고에 가서 운송수단에 화물을 적재하고 출항수속을 밟는다.

관세청  
부산국제우편세관  
세관장 임 창 환  
([chron21@customs.go.kr](mailto:chron21@customs.go.kr))

**관세무역관련법령 변경 소식**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미비점이 보완된 내용과 조세특례제한법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된 내용을 알아보자**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미비점이 보완된 해당 고시는 7 월 1 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주요 개정사항은 하기와 같다.

※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기간 3 년으로 연장  
- 현행 수입업체가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 원산지사전화인을 관세청으로부터 받고 있는 것과 관련, 7 월 1 일부터는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기간이 3 년(기존 1 년)으로 연장되는 등 수입물품에 대한 신속한 물류흐름과 관세혜택이 동시에 제공될 예정이다.

※ 국제적 상거래 관행을 인정하여 지식경제부 및 관세청에서 적정표시방법으로 회신한 유권해석 반영  
향후 △Manufactured by 물품 제조자 회사명, 주소, 국명 △Manufactured in 국명 △Produced in 국명 △국명 Made 등에 의한 표시방법 인정된다.

(중전까지는 수입물품에 원산지를 표기할 때 △made in 국명 △product of 국명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주소·국명 등으로 표시한 경우만 적절한 원산지 표기방식으로 인정 되었음)

※ 위생도기에 대한 구체적 위반사례를 적시 하여 혼란 방지

\* 부적정표시: 위생도기제품 바탕색과 같은 색 또는 비슷한 색으로 표시

\*\* 미표시: 소변기, 좌변기 안쪽 깊숙한 곳 또는 밑바닥에 표시

※ 판유리를 수입 후 국내에서 단순 가공한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요구 명확화

**□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

관세법 제 87 조에 따라 수출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변경한 경우 관세청장은 해당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또한 변경된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 87 조제 3 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로부터 30 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63. 태양전지 모듈 자동 납땜장치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 87 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품명: 태양전지모듈 자동납땜장치 (Tabber&Stringer/NTS-150-S-H-3K)

※ 종전공문: 품목분류 1 과-322(2009.07.08)

※ 물품설명  
-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셀을 전기적으로 직렬 연결하기 위하여 납이 도금된 구리 도선을 고온 압축공기(hot-air)를 이용하여 자동 납땜하는 장비  
※ 변경전 HS 품목번호: 제 8486.40-2099 호  
※ 변경후 HS 품목번호: 제 8486.40-2010 호  
※ 변경사유: 반도체 조립용의 '와이어 접착기'에 해당(2011 년 제 2 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64. 휴대용 카메라 렌즈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 87 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품명: 1.3M Lens Ass'Y ; MM44H

※ 종전공문: 품목분류 1 과-103(2009.03.27)

※ 물품설명  
- Lens(글라스 렌즈 1 장, 플라스틱 렌즈 3 장) 및 Barrel, Set ring 등으로 구성되어, CMOS Image Sensor 기반 카메라모듈에 장착하는 물품  
※ 변경전 HS 품목번호: 제 9002.11-1000 호  
※ 변경후 HS 품목번호: 제 9002.11-9090 호  
※ 변경사유  
- 대물렌즈 중 카메라용의 것으로서 사진기용의 것(제 9002.11- 1000 호)이 아닌 "기타의



기타(제 9002.11-9090 호)에 해당(2011 년 제 2 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 118 조에 따른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6 월 7 일부터 시행되는 해당 개정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118 조제 1 항에 따르면 고속철도 건설용 물품, 디지털텔레비전 방송장비 및 2012 여수세계박람회용 물품 중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고속철도 건설용 물품으로서 관세경감 대상이던 37 개 품목 중 국내제작이 가능하게 된 레일권상기 등 12 개 품목을 관세경감 대상에서 제외하고,

※ 디지털텔레비전 방송장비로서 관세경감 대상이던 36 개 품목 중 국내제작이 가능하게 된 슬로우모션장치 등 9 개 품목을 관세경감 대상에서 제외하며,

※ 관세가 감감되는 2012 여수세계박람회용 물품에 국내제작이 곤란한 폴리올레핀 지붕방수용 외장시트 등 24 개 품목을 새로 추가하는 한편, 일부 관세경감 대상 품목의 규격을 조정하려는 것임.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최 지 아  
([jachoi@customsservice.co.kr](mailto:jachoi@customsservice.co.kr))

EDITORIAL NOTE

신한관세법인의 관세사들은 2 주에 한번씩 모여 미국 관세청의 예규(Rulings)를 스터디하고 있다. 미국 Rulings 는 우리 나라 관세청에서도 자주 인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 중요성과 연구의 실익이 크다. 지난해부터 다수의 사례를 연구 하였으나 그 중에서도 함께 공유할 만한 중요한 케이스를 선별하여 소식지에 게재해 나가고 있다. 이번 소식지는 Rulings 스터디의 조연자인 정정식 관세사께 조언을 받아 해당 Ruling 담당자의 글을 실는다.

# 과세가격 산정 시 Repair Cost 의 공제요소 해당여부

(HQ 544394 '90.10.09.)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법정가산요소를 가산하고 조정한 거래가격이다.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이란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을 말한다. 그러나 1) 수입 후에 행하여지는 설치·조립비용, 2) 수입항 도착 후의 운송·보험료, 3) 우리나라에서 부과된 관세 등 세금, 4) 연불조건수입인 경우 연불이자(이상 4 가지)가 구매자의 실제지급가격과 명백히 구분되는 때에는 이를 실제지급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 거래사실(Facts)

당해 사안은 미국의 수입자 『Sony Corporation of America』(이하 "S")가 수입한 특정 전자제품의 가격결정과 이에 대한 불복내용에 관한 것으로 거래사실은 다음과 같다.

- 1) 수입자 S가 수입하는 특정물품은 텔레비전, 라디오,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 기타 전자제품 임
- 2) S 는 미국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물품의 품질에 대하여는 구매일로부터 90 일 또는 1년의 기간 동안 하자를 보증 함.
- 3) warranty(하자보증)은 제품의 정상조건에서의 재료상, 제조공정상의잠재적 하자를 커버함.(The warranty covers latent defects in material and workmanship under normal conditions)
- 4) 잠재하자상품의 경우 소비자는 S 에게 반납하여, 새로운 물품을 받고 S 는 하자상품을 수리한 후 second quality merchandise 로써 할인된 가격으로 재판매함.
- 5) 또한 S 는 잠재적 하자 상품의 수리를 위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서비스센터와도 계약, 서비스 센터는 인건비와 부품가격을 포함한 수리비 총액을 수입자에게 청구 함.
- 6) S 는 발생한 수리비의 총액과 재판매된 제품의 손실을 보여주는 기록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러한 기록 자료의 사본은 일부 제출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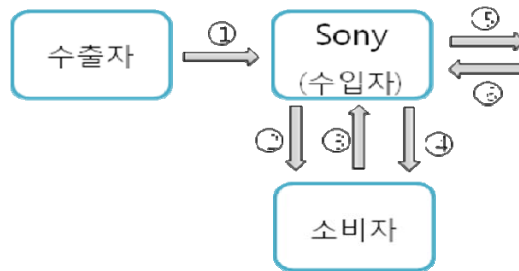
### □ 쟁점(Issue)

상기한 수리비용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서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

### □ 쟁점검토(Law and Analysis)

#### 1. 법적근거

수입물품에 대한 최우선의 과세가격결정 방법은 관세법(19 U.S.C.) §1401a 규정의 거래가격 방법 이다. 동 규정은 거래가격에 대하여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에 법정 가산 금액을 더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대하여 "수입물품에 대하여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총금액" 으로 규정하고 있다.(b)(4)



- ① 전자제품 수입
- ② 전자제품 구입
- ③ 하자 있는 경우 반품
- ④ 하자제품 신제품으로 교체
- ⑤ 하자제품 수리 의뢰
- ⑥ 수리비(인건비, 부품가격)

Generra 판결 (Slip - Op. 89 - 1652 (1990))에 따르면 법원은 수입자가 별도로 판매자에게 지급한 모든 금액은 수입물품과 관련된 금액으로 보아 모두 실제지급가격에 포함하도록하는 세관의 입장은 합당하다고 판정한바 있다.

이와는 반대로 402(b)(3)(A)규정에 의하면 특정 요소는 거래가격에 포함되지 않음을 규정 하고 있으며, 402(b)(3)(A)(i)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의 금액이 구매자 실제금액과 명백히 구분되는 때에는 이를 거래가격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A) 수입 후에 행하여지는 당해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당해 수입 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 2. 수입자의 주장

상기의 규정(402(b)(3)(A)(i))을 인용하여 수입자는 쟁점대상의 수리비용은 미국으로 수입된 이후 행하여진 수입물품의 유지(maintenance)를 위한 합리적인 가격 (warranty)과 연관된 금액으로 거래가격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C.S.D. 88-18 을 인용하여 "estimated" repair costs 로써 공제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3. 미국 관세청의 입장.

TAA 의 402(b)(3)(A)(i)규정은 속성상 warranty /repair costs 를 언급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402(b)(3)(A)(i)규정에 의하여 warranty /repair costs 를 거래가격에서 공제할 권한이 있느냐의 쟁점에 대해 이러한 사안은 일반적으로 턴키계약(turn-key contracts)하에서 적용된다는 것이 세관의 입장이다. 이러한 해석은 "수입 후에 행하여지는 산업플랜트, 기계, 장비와 같은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당해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은 거래가격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charges for construction, erection, assembly, maintenance or technical assistance, undertaken after importation on imported goods such as industrial plant, machinery or equipment" should not be included in transaction value) 라고 한 GATT Valuation Agreement 규정이 이를 뒷받침한다.

상기한 규정은 잠재적 하자에 의한 수리(repairs for latent production defects)비를 거래 가격에서 조정하는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402(b)(3)(A)(i)규정은 산업플랜트, 기계, 장비와 같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적용된다는 것이 관세청의 입장이다.

결론적으로 거래가격에서 공제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한 402(b)(3)(A)(i)규정은 소비품에 대한 하자보증/수리비용을 공제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산업플랜트, 기계, 장비와 같은 수입물품의 수리비와 관련된 금액에 적용된다.

이에 덧붙여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수입물품의 교환에 상응하여 지급하는 하자보증을 고려한 금액을 포함한 모든 금액은 분명 실제지급 금액의 일부를 이루며, 이는 누구도 공제할 수 없다.

#### □ 결정(Holding)

쟁점 사안에서의 warranty cost 는 실제지급금액과 명백히 구분될 수 없거나 402(b)(3)(A)(i)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도 않는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신 성 훈

(shshin@customsservice.co.kr)

(※예규 원문은 아래 링크 - 공지사항 참고)

http://www.customsservice.co.kr

### WHERE IS GRACE CHANG?

## 1 등 신화



장승희 대표 관세사

6 년 연속 이어오던 국제화물수송 1 위라는 타이틀이 대한항공에서 Cathaypacific Airline 으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7 년 연속 유지라는 비전을 갖고 있었는데 사라지게 된 것이지요. 이 타이틀은 2004 년 19 년 동안 연속 1 위를 고수하던 독일의 Lufthansa 를 꺾고 얻은 것이었다고 합니다.

10 년동안 휴대폰시장의 1 위를 차지하고 있던 Nokia 도 Apple 에게 그 자리를 넘겨주었고, 자동차 업계 강자였던 GM 도 2008 년 TOYOTA 에 1 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영원한 일등은 없다는 사실을 다시 생각합니다. 부단한 정진, 끊임없는 노력과 변화가 있어야만 일등이라는 자리를 지켜 갈 수 있을 것 입니다. 최고의 제품, 최고의 서비스를 갖추고 제공할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부디 대한민국의 대표적 항공사인 대한항공이 국제화물수송 1 위라는 자리를 다시 찾아 일등신화를 계속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달 cover story 는 '항공화물의 수입물류흐름'에 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항공화물의 창고보관과 운송물류를 담당하는 신한관세법인의 자매회사인 신한 인비스타가 김포에서 창고보관 및 물류업무를 개시하여 반입, 보관, 통관, 배송의 전 영역에 걸쳐서 물류전반의 토털코스트를 절감하고 중단없는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EU FTA 협정이 7 월 1 일부터 발효 됩니다. 수출입업체가 대비를 해야 할 사항으로 원산지 인증수출자제도, 원산지 검증제도가 있습니다. 전문가인 관세사의 도움을 받아서 FTA 활용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중국과의 교역량증가로 중국에서의 수출입 통관절차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으로 연재되는 시리즈 중에서 이번에는 '중국에서의 일반화물 수출입 통관절차'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관세무역관련 법령개정소식에서는 원산지 제도 운영에 관하여 적정표시방법이 변경되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의 관세감감 요건 추가와 수출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가 변경되었습니다..

관세평가는 수입후 하자 수리비용이 공제요소가 될 수 있는 가에 대하여 사례분석을 통해서 하자보증비용과 실제지급가격과의 관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각 분야에서 1 위의 자리를 유지하고 계신 고객사들이 그 일등신화를 유지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신한관세법인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정진하며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수출입 통관대행, 심사 권리구제 컨설팅, FTA, AEO, 환급 컨설팅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물류회사인 신한인비스타를 통하여 김포의 보세창고에서의 보관업무등 total service 도 제공해 드리며 고객의 발전이 저희 신한의 발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욱 발전하시기를, 1 위의 자리를 잡으시고 또 지켜나가기기를 기원드립니다.

시원하게 내리는 빗줄기가 여러분이 더욱 힘차게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시기를...

신한관세법인 장승희 *Seunghee Chang*

## ZOOM-IN TRADE 를 소개하세요!

어려울 때일수록 좋은 정보를 친구와 나누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Zoom-in Trade"를 친구들에게 소개하세요. 이메일 ([shinhan@customsservice.co.kr](mailto:shinhan@customsservice.co.kr)) 이나 전화(02-542-1181)로 동료분의 이메일을 남기시면 줌-인트레이드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센스 있는 친구가 되는 법!! 참 쉽죠?



### ABOUT WRITERS

#### COVER STORY -

항공화물의 수입 물류흐름



성기창 관세사 ([kcsung@customsservice.co.kr](mailto:kcsung@customsservice.co.kr))

####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인천공항지사
- 항공화물 수출입 통관 전담

#### FTA News-

한-EU FTA 발효. 이제는 활용이다!



강승주 관세사 ([sjkang@customsservice.co.kr](mailto:sjkang@customsservice.co.kr))

####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 FTA Team
- 원산지 관리자
- 前) LG 전자(주) HE 본부 관세그룹

#### Voices From The Fields-

중국기획연재시리즈 @ 해관감관화물의 통관절차



임창환 세관장 ([chron21@customs.go.kr](mailto:chron21@customs.go.kr))

#### PROFILE

- 現)부산국제우편세관장
- 現)중국관세무역연구회 간사장
- 前)복단대학 상해물류 연구원 초빙학자 파견
- 前)배재대학교 무역학과 겸임교수

#### 관세 법령 변경

관세법 및 관세법 시행규칙등



최지아 관세사 ([jachoi@customsservice.co.kr](mailto:jachoi@customsservice.co.kr))

####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 중소기업진흥공단 강연
- FTA 통관 실무 및 비즈니스 모델
- FTA Team

#### US Rulings 연재 @

과세가격 산정 시 Repair Cost 의 공제요소 해당여부



신성환 관세사 ([shshin@customsservice.co.kr](mailto:shshin@customsservice.co.kr))

####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 AEO Team 팀장
- 한국관세사회 AEO 인증 가이드북 발간 참여
- 웅진패스원 강사 관세평가